

校書館의 書籍印刷에 대한 小考

— 正祖朝를 中心으로 —

玄 英 娥*

<目 次>

- | | |
|-------------------|--------------------|
| I. 序 言 | IV. 刊行本에 對한 資料的 性格 |
| II. 校書館의 變遷過程 | V. 結 語 |
| III. 校書館의 組織 및 機能 | |

I. 序 言

우리나라의 印刷文化를 꽃피웠던 朝鮮朝에 있어서 校書館은 前期 및 後期 즉 竚代를 通하여 書籍의 印出을 關望하던 機關으로 朝鮮朝 文化 暢達의 產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므로 이어서 印出된 書籍에 관한 研究는 즉 朝鮮朝의 官板에 대한 分析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당시의 時代 思想 및 文化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바, 본 研究에서는 우선 校書館 자체의 變遷 過程 및 그 機能과 함께 朝鮮 王朝 後期에 있어서 가장 文運이 振作되었던 正祖朝를 中心으로 當時 校書館을 通해 刊行되었던 書籍들의 性格을 糾明해 보고자 한다.

II. 校書館의 變遷過程

校書館은 朝鮮王朝 建國初期 즉 太祖元年(1392) 7월에 設置된 것으로서 校

*明知大學校 人文社會大學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2 도서관학논집

書監이라 하여 文籍의 印出과 함께 祭醮 祝疏 등을 맡게 하였던 官衙이다.⁽¹⁾ 朝鮮朝의 제도에 있어서 中國의 것을 따르는 것이 많은데 이 역시 漢·唐代에 있었으니 즉 漢에서는 天祿閣이다 하였고 唐에서는 秘書省이라 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이들이 書籍의 印刷를 위하여 設置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우나 어쨌든 寫本의 그 保存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校書館의 연원을 살펴보면 멀리 泰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니 즉 禁書省이라 하였는바 이것이 곧 朝鮮朝의 校書館과 類似한 機關이었을 것이라 보인다.⁽²⁾ 그후 高麗朝에서는 太祖 王建이 內書省을 設置하여 書籍 印出을 맡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代 成宗 14年(995)에 이르러서는 이를 秘書省이라 改稱하였으며 忠烈王 24年(1298)에는 秘書監이라고 하였으며 同王 34年(1308)에는 典校署로 하여 그 職任을 낮추었으며 恭愍王 5年(1356)에 다시 秘書監, 11年(1362)에는 典校寺등으로 改稱하였던 것이다.⁽³⁾ 이와같이 高麗朝에서는 朝鮮朝의 校書館과 같은 機關을 內書省, 秘書省, 秘書監, 典校署 또는 典校寺등으로 呼稱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朝에 이르러 역시 高麗의 制度를 본받아 太祖 元年(1392) 校書監을 設置하였으며,⁽⁴⁾ 그 후 建國 初期의 諸般事情의 整頓과 함께 文物의 整備가 이루어 지며 太宗 元年(1401)에는 校書監을 校書館이라 改稱하여 그 임무를 擴充시켰던 것이다.⁽⁵⁾ 또한 校書館은 藝文館 成均館과 함께 三館이라 불리웠으며 이에 專任職을 두어 印書의 일을 맡게 하였던 것이니⁽⁶⁾ 太宗이 매우 이 기관을 重히 여겼던 것 같다.

世祖 6年(1460) 5월에 이르러서는 太宗 3년에 設置된 바 있는 鑄字所도 이 校書館에 合屬시켰으니⁽⁷⁾ 즉 鑄字事業은 몇해만에 한번씩 있는 것이므로 그 때마다 臨時職을 두고 그 印刷는 校書館에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1) 太祖實錄 卷 1 元年 7月 丁未條.

(2) 正祖實錄 卷 45 20年 12月 丙戌條.

(3) 高麗史 志 30.

(4) 太祖實錄 卷 1 元年 7月 丁未條.

(5) 太宗實錄 卷 2 元年 7月 庚子條.

(6) 成宗實錄 卷 161 14年 12月 壬午條.

(7) 世祖實錄 卷 20 6年 5月 丁酉條.

같다. (8) 이와같이 鑄字所를 校書館에 合屬시킴으로써 校書館은 木板뿐만 아니라, 活字의 鑄造와 함께 活字印刷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니 국가의 대표적인 인쇄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6년만인 世祖 12年(1466) 1월에 校書館은 典校署로 改稱되며 그 地位를 낮추었던 것이다. (9) 이에 대하여 成宗 14年(1483) 10月 典校署博士 高彥謙等은 漢과 唐에의 뿐만 아니라 高麗朝 및 朝鮮朝·太祖·太宗까지도 이 機關은 省·寺·監·館이라하여 모두 3品 衙門으로 重히 여겼던 것이나, 世祖朝에 와서는 이를 典校署라 하여 惠民署, 掖庭署, 活人署의 類와 함께 가볍게 여기었으며 典校署가 이미 成均館, 藝文館 承文院과 함께 四館으로서 文臣의 出身之地임에도 不拘하고 다른 衙門은 모두 3品이나, 典校署만이 唯獨 從 5品衙門이므로 典校署의 地位를 올려주고 또한 校書館으로 復稱케 할 것을 建言하였던 것이다. (10) 이 建言은 그 다음해 成宗 15年(1484) 2월에 비로소 받아들여져 校書館으로 復稱케 되었다. (11)

즉 世祖때 典校署로 낮추어진 校書館이 이제 다시 原狀復歸를 한 셈이다. 이후 英祖朝까지 校書館의 조직과 기능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776年 正祖가 即位를 하면서 奎章閣을 設立 (12)하였는데 이때 校書館을 奎章閣의 外閣으로 편입시켜 (13) 芸閣이라고도 하였으며 이에 鑄字所를 예속시켰으니 이로써 명실공히 右文政策을 펴 나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

(8) 金元龍 “李氏朝鮮 鑄字印刷 小史 一鑄字所를 中心으로,” 향토서술, 3 1958.

(9) 世祖實錄 卷38 12年 正月 戊午條.

(10) 成宗實錄 卷 159 14年 10月 甲申條. 「...建我太祖開國之初 改定官制稱校書監 判事二人正三品 監二人從三品 小監二人從四品 又有丞·郎·著作·校勘·正字 太宗改稱校書館 增置校理一人 與 藝文館成均館 並稱三館 豈非以本署職掌匪輕 故或謂之省 或謂之寺 或謂之監 或謂之館 秩皆三品 歟 恭惟我 世祖大王重開邦運 斟酌損益 革三館之法 改館爲署 自是 校書衙門始輕矣 本朝官制 署爲最卑 如惠民署·掖庭署·活人署之類 是已本署則掌鑿校典香祝 職任匪輕 非此等小司 細官之比也 其名與實似 大相戾此臣等取以不敢終默者也 且本署既與成均館·藝文館·承文院·並列爲四館 則均是文臣出身之地 而他皆三品衙門 署獨爲從五品衙門 是豈朝廷設官分職並置四館之意歟...藝文館三品衙門 而直提學以他官無 奉教以下 以七品爲實官 臣等 以爲亦依此例 陞本署爲三品衙門 而復稱校書館...」

(11) 文獻備考 卷 220 職官考 7 校書館條.

(12) 正祖實錄 卷 4 即位年 9月 癸巳條

(13) 正祖實錄 卷 4 元年 12月 癸丑條.

Ⅲ. 校書館의 組織 및 機能

校書館은 그 변천 과정에 따라 또한 職制上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니 처음 朝鮮王朝 創建 當時 즉 太祖때의 校書監의 職制를 보면 判事(正 3品) 2員, 監(從 3品) 2員, 小監(從 4品) 2員, 丞(從 5品) 1員, 郎(正 7品) 2員, 著作郎(正 8品), 校勘(正 9品) 2員, 正字(從 9品) 2員 등이 있었다.⁽¹⁴⁾

다음 太宗 3年(1403)에는 校書監을 校書館으로 改稱하면서 校理를 두어 小監을 代身케 하였으며 副校理(從 6品 1員)을 增員하였다.⁽¹⁵⁾ 그러나 世祖 12年(1466) 1월에 校書館을 典校署라 改稱될 당시에는 校書郎은 博士, 著作郎은 著作, 校勘은 正字, 正字는 副正字라하고 著作郎은 革罷하는 등 많은 변화들을 볼 수 있다.⁽¹⁶⁾

成宗때 校書館으로 復稱된 때의 職制를 보면 他宮이 兼했던 判校(正 3品) 1員과 함께 校理(從 5品) 1員, 別坐(從 5品), 別提(正, 從 6品), 博士(正 7品) 2員, 著作(正 8品) 2員, 正字(正 9品) 2員, 副正字(從 9品) 2員으로 되어 있다.⁽¹⁷⁾ 이외에도 職制가 때때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全體적으로 고쳐진 일은 없고 다만 낮은 職에 增減이 있었을 뿐이다.

正祖 元年 校書館이 奎章外閣으로 편입될 때의 職制를 보면, 判校는 減해지고 그 대신 提調라는 職은 2員을 신설하여 內閣 즉 奎章閣의 提學이 겸하도록 하였다. 다음 副提調 2員 역시 內閣의 直提學이 겸했으며 校理 2員中 1員은 內閣의 直閣이 겸했다. 이 외에는 前대로 博士 2員, 著作 2員, 正字 2員 및 副正字 2員이 있었고 기타 雜職과 吏屬이 있었던 것이다.⁽¹⁸⁾

以上을 表로 作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太祖實錄 卷 1 元年 7月 丁未條.
 (15) 太宗實錄 卷 2 元年 7月 庚子條.
 (16) 世祖實錄 卷 38 12年 正月 戊午條.
 (17) 經國大典.
 (18) 正祖實錄 卷 5 2年 3月 乙酉條.

〈校書監〉

判事 (正 3品) 2員
 監 (從 3品) 2員
 小監 (從 4品) 2員
 丞 (從 5品) 1員
 郎 (正 7品) 2員
 著作郎 (正 8品) 2員
 校勘 (正 9品) 2員
 正字 (從 9品) 2員

〈校書館〉(太宗朝)

判事 (正 3品) 2員
 監 (從 3品) 2員
 *校理
 丞 (從 5品) 1員
 *副交理 (從 6品) 1員
 郎 (正 7品) 2員
 著作郎 (正 8品) 2員
 校勘 (正 9品) 2員
 正字 (從 9品) 2員

〈典校署〉

判事 (正 3品) 2員
 監 (從 3品) 2員
 小監 (從 4品) 2員
 丞 (從 5品) 1員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校書館〉(成宗以後)

判校 (正 3品) 1員
 校理 (從 5品) 1員
 別坐 (從 5品)
 別提 (正·從 7品)

6 도서관학논집

博士	(正 7品)	2員
著作	(正 8品)	2員
正字	(正 9品)	2員
副正字	(從 9品)	2員

〈外 閣〉

提調	2員
副提調	2員
校理	2員
博士	2員
著作	2員
正字	2員
副正字	2員
雜職	(可準 10員)
吏屬	(書吏, 傳令等 20名)

이상과 같이 校書館의 직제는 成宗이후 正祖朝에 많은 개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아울러 직제 상에 나타난 校書館 官員들의 인용제도 및 내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每 四孟朔에 提調로 하여금 官員들에게 試驗을 보게 하되 먼저 大篆, 그 다음에 小篆, 印篆 등을 쓰게하여 그 點數에 따라 等級을 定하였다. 그리고 去官時 4年間의 이 點數를 모두 합하여 四十分 以上을 一等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者는 外補에 當하더라도 京官 要職에 두어 本館의 職을 兼하게 하였다.⁽¹⁹⁾

2. 校書館員의 給料가 적어 官員數가 얼마 안되기때문에 글씨를 잘 쓰거나 그 일에 能한 사람이 별로 없으므로, 兩館과 承文院 參外官 中에서 이에 該當하는 者를 擇하여 校書館에 推薦하였는 바 그에 따라 官을 겸하게 하였다.⁽²⁰⁾

3. 校書官의 參外官이 滿四年의 職을 맡는 동안 글씨에 熟達하게 되지만

(19) 世宗實錄 卷 22 8年 正月 癸丑條.

(20) 上揭書, 卷 78 19年 8月 己巳條.

去官 後에는 쓰게 되지 않으므로 글씨를 배우는데 별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本館을 거쳐 篆字를 잘 쓰는 者로서 3品 以下 6品以上 中에서 3·4品이면 校理를 兼하고 5·6品이면 郎을 兼하게 하였다.⁽²¹⁾

4. 本館 提調는 月과 季마다 本館에서 錄官을 兼하여 篆文을 쓰게 하여 等差대로 報告하였다. 그리고 年末에 가서 또한 이를 吏曹에 移文함으로서 이에 따라 職을 올려주기도하고 내리기도 하였다.⁽²²⁾

5. 野人의 書契가 吏曹에 왔을 때 本館에서는 官員으로 하여금 印迹을 살펴 피게 하여 印畫가 明白한데도 識別하지 못할 때에는 잘못에 붙였다. 또한 이런 경우가 다섯 번에 達하면 그 職을 罷하고, 篆字를 習得케 하여 다음해의 餘用을 기다리게 했다.⁽²³⁾

6. 才士를 뽑는 試驗에 1·2次 任하지 않은 者는 報告하고 3次까지 참가치 않을 때는 啓聞하여 論罪하였다. 그러나 香室 入直이나 그 밖의 公的인 理由로 任하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 朔에 追書케 하였다.⁽²⁴⁾

7. 새로이 及第한 사람은 分館時 吏曹에서, 年少한 者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任命하였다.⁽²⁵⁾

이와같이 校書館이 書籍의 印出과 印篆을 맡고 있는만큼 技術을 要하는 낮은 職에서는 글씨를 잘 쓰는 것이 問題가 되었던 것 같으며, 따라서 그들의 任用 규정은 일반 文官의 任用 規定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校書館의 기능을 이외에 校書館의 기능을 보던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校書館은 書籍을 印出하고 또한 香祝과 印篆을 맡아 왔는데 그 中 주된 任務는 書籍의 印出事業이었다. 그에 대한 例로서

「傳曰 東國書籍全秩絶無 其中如龍飛御天歌·內訓·書傳·詩傳諺解·儒先錄等冊 待左傳畢印後 即後即爲繼印事 言于校書館」⁽²⁶⁾

(21) 上揭書, 卷 22 8年 正月 癸丑條.

(22) 上揭書.

(23) 上揭書.

(24) 上揭書.

(25) 上揭書.

(26) 光海耶日記 卷 27 2年 3月 丁卯條.

이라 하였는바 光海君은 우리나라 書籍에 全秩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校書館으로 하여금 龍飛御天歌·內訓·書傳·詩傳諺解·儒先錄과 같은 冊은 左傳을 다 印刷한 後에 繼續 印出할 것을 校書館에 傳旨하였던 것이다. 이는 宣祖朝의 壬辰亂으로 書籍이 거의 소실되고 그 후 補充이 어려웠던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端宗實錄 卷 7 元年 9月 戊寅條에

「承政院啓 近日校書館閱興天寺厥藏冊板移置本館 其中 崔致遠桂苑筆耕五十餘板 請出經筵藏本補刻…」

이라 하였는바 校書館에서 興天寺 冊板을 本宮에 옮겨 오는데 그 중 崔致遠의 桂苑筆耕중 50餘板이 빠져 經筵에 있는 책으로 補刻케 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니 이렇듯 地方寺刹의 冊板도 올려다 印出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印出을 맡은 만큼 校正의 責任 역시 徹底하였던 것 같다. 즉

「…祖宗朝校正誤字 非徒付之於校書館 亦令弘文館官員校正 故弘文館爲之一會校正 又有輪番親詣校館正之列 且校書館員誤印之罪 其律非輕 近來厥印之書多有誤字 不能讀過 豈不寒心 今者既不能復祖宗之舊規 則寧付厥業之人而校正可也 二人料不至甚多 而一字之誤厥關非輕 豈不可慮 仍給二人之料 使之校正 俾無誤字 不則後 祖宗之舊規 亦可也…」⁽²⁷⁾

라 하였는바 書籍에 誤字가 많아지자 그의 對策으로 校書館뿐 아니라 弘文館에서도 校正을 보게하고, 또한 校正만을 專門으로 取扱하는 者를 두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校正을 重히 여겼으며 따라서 校書館員의 誤印之罪에 對하여는 律로서 輕하였는데 그 규정이 가법치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校書館은 書籍의 印出만으로 그 任務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던 듯 싶다. 즉 校書館에서는 書籍의 販賣도 兼하였던 것인데 中宗朝에

「御夕講… 侍講官具慎曰 我國經籍數少 學者病之 非徒京師外方儒生雖志學業未見 書籍者頗多 校書館和賣之法雖載令甲 專不奉行 故未能周布京外 請多數印出以布京外」⁽²⁸⁾

(27) 明宗實錄 卷 14 8年 3月 戊寅條.

(28) 中宗實錄 卷 13 6年 5月 丙辰條.

를 보면 당시에 서적이 몹시 귀하였고, 또한 유생들이 學業에 뜻이 있다하여도 書籍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和賣之法이라는 市中 販賣의 規定이 있지만 행하여 지지 않음을 들어 그의 實行을 建議한 例인 것이다.

그 외에도 明宗 9年 11月 鄭夢周 書院을 세우는데 그 賜額과 함께 書籍의 頒賜도 있었는데 이때에 文武樓에 冊이 없었던 關係로 校書館에 있는 販賣用 書籍을 賜給한 사실이 있었다.⁽²⁹⁾

이 밖에도 明宗 9年 魚叔權이 쓴 攷事撮要의 書冊市准에 의하면

小學大文：紙五貼十四張，價米一斗五升

大學：紙三貼三張，價米一斗

中庸：紙五貼六張，價米一斗五升

論語：紙三十四貼，價綿一匹半米二斗

孟子：紙二十四貼十二張，價綿布一匹米二斗

라 있는바 印出할 때 소요된 紙數와 冊價가 明示되어 있으니 필시 校書館에서 印出하여 市中에 販賣한 例가 아닌가 推測된다.

이와 같이 校書館은 書籍의 印出뿐 아니라 때에 따라 그의 販賣도 하였던 것이다.

IV. 刊行書에 대한 資料의 性格

校書館에서 刊行된 書籍은 朝鮮朝 歷代를 통해 무수히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刊行된 書籍에 대한 研究는 곧 朝鮮朝 官板에 대한 研究의 一環이 되겠으나 전체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단계적으로 朝鮮朝 後期에 있어 文藝復興 時代로 손꼽히는 正祖朝로 局限시켜 당시 校書館에서 印出된 書籍들을 살펴 研究하므로써

(29) 明宗實錄 卷 17 9年 己亥條, 「禮習啓曰 鄭夢周道德節行 無讓於安裕 其於生長之地 建立書院 藏修學徒 教勵風化 大是美事 宣賜庸額 頒降書冊 奴婢·田結等事……書冊依柏修書院 四書五經各一件 以文武樓所藏帙賜送 而綱目及事文類聚則餘在只一件 賜給爲難 以外教書館貿易冊內 小教通鑑 通鑑續編各一件賜送…」

이들에 대한 特性을 살펴 보고자 당시 편찬 刊行된 諸書를 收錄한 羣書標記를 통해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崇儒·朱子學에 관한 資料

朱子學은 朱子가 儒敎의 人倫主義에 哲學的인 意味를 附加하여 宇宙와 人間을 一括하는 大規模의 哲學體系를 세운 學問이다. 이런 朱子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麗末이라 傳해지고 있다.⁽³⁰⁾ 그 후 朝鮮王朝가 創建되면서부터 崇儒抑佛의 理念과 政策아래 朝廷에서는 그 朱子學을 크게 장려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朝는 이러한 理念과 體制속에서 朱子學이 자못 隆盛했던 黃金時期였으니, 朱子學의 大家인 李滉, 李珥, 徐敬德, 奇大升, 成渾, 柳成龍 등이 모두 이 時期에 輩出되었던 것이다.

이런 朱子學이 後代로 내려와 正祖朝에 있어서 文化 振興政策과 더불어 더욱 發展을 보았던 것이다. 특히 先天의으로 好學의 氣質을 지닌 正祖는 春邸時부터 많은 書籍을 耽讀하여 폭넓은 學問生活을 繼續하였거니와 王이 된 以後에 있어서도 文運 振作 政策을 積極 促進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第一主義로 내세워 重視했던 것이 朱子學이다.

그는 朱子書節約에서

「夫嘗謂今日俗學之蔽廬矣 挽回澄治之道 惟在乎明正學 明正學之方 又在乎尊朱子
…孟子曰我正人心 君子反經而已 尊朱所以尊經也 尊經所以尊王也 王道尊於上然後
學術明於下……」⁽³¹⁾

라 하였듯이 挽回澄治의 道는 오직 正學을 밝히는 것이며 그 正學은 朱子の 學을 尊崇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같이 正祖는 正學 즉 朱子學을 重視했던 것이다. 이런 朱子學의 信奉은 歷代 어느 王에게나 該當되는 理念이었겠지만 正祖는 유난히 이를 重視하여 書籍 輸入 政策에 있어서도 朱子學 關係書가 注流를 이루었던 것이다.⁽³²⁾

(30) 高麗史 列傳, 「時程朱之學 始行中國 未及來方 頤正在元得 而學之東遷」이라 있는 바 高麗 忠肅王代의 百頤正이 傳했다 한다.

(31) 羣書標記 御官書 4, 朱子書節約.

正祖는 이렇게 朱子書를 購入만 한것이 아니고, 本 羣書標記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많은 朱子學 關係書를 編纂·刊行하였는 바 특히 校書館을 통해 刊行된 것으로는 大學類義 20卷, 易學啓蒙集箋 4卷, 經書正文 10卷, 朱書百選 6卷, 五經百篇 5卷, 春秋左氏傳 28卷을 비롯하여 史實을 通한 朱子學的 敎訓의 摺得資料인 新訂資治通鑑綱目續編 27卷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두 朱子學에 관한 根本理論과 史實을 通해 敎習케 하는 資料들인 것이다.

이렇듯 正祖는 中國의 朱子學을 引入하여 그의 根本을 알게 하였으며 또한 百姓들의 大義名分에 立脚한 行動과 三綱五倫을 正軌에서 實踐토록 하기 위해 新訂資治通鑑綱目續編 27卷등 一次的으로 中國의 諸史書를 涉獵하여 그 事蹟을 본보기로 하였으며 窮極的으로는 우리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이 分野의 文獻을 엮어 펴냈으니, 後人에게 模範이 될 것을 取하여 梁大司馬實記 10卷, 五倫行實圖 5卷, 金忠壯遺事 5卷 및 林忠愍實記 5卷, 李忠武公書 14卷 등은 모두 이러한 目的下에 엮어진 것들이라 볼 수 있다.

要컨대 正祖는 朝鮮王朝의 國治理念인 朱子學的인 傳統精神을 一次的으로 中國에서 배우고 이를 우리 民族의 自主性振作에 밑거름이 되도록 適用시켰으며, 또한 그 大義精神의 실천을 우리에게 맞도록 促進시키기 위해 많은 文獻들을 刊行하였던 것이다. 韓國學的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 分野의 研究에 있어서도 반드시 校書館의 刊行書를 그 入門 資料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詩文에 관한 資料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正祖는 그의 好文性과 함께 朱子學 隆興에 置重하여 性理學 關係 文獻을 刊行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正祖는 大義名分을 重要視하는 崇儒의 學問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詩文을 中心으로 한 文章學도 역시 그러한 土臺위에서 눈부신 發展을 보았다. 正祖는 王世孫때부터 文章에 關心을 두었으니 英祖 52년(1776) 2月, 그러니까 그가 春邸로 있었을 때에 벌써

(32) 鄭亨應 “正祖의 文藝復興政策,” 東方學志: 11 (1970年 12月), pp. 166~173.

「王世孫坐尊賢閣 都承旨入對 今日文體關係世道 可當一變……」⁽³³⁾

와 같이 都承旨에게 文體는 世道와 關係되니, 그 體를 一變시키라고 까지 命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正祖의 文章에 對한 關心은 朱子學의 信奉과 함께 當時 胡族인 淸朝의 文化가 밀려 오는데 對해, ⁽³⁴⁾ 다시 宋明 以前의 狀態로 돌아가려는 傾向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이 文體反正이라는 觀點으로도 研究된 바 있으나 ⁽³⁵⁾ 하여튼 이는 朱子學 信奉의 結果로서 春秋大義 또는 大義名分에 立脚한 正統의 詩文과 文章을 尊重하려는 態度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正祖의 文章에 對한 政策을 볼 것 같으면, 그는 우선 詩文에 있어서

「親撰 示校正諸學士曰 唐宋八子者 文章之淵府也 流西京之愷悌 蕩南朝之脂韋 鉅細洪纖 各臻其妙……」⁽³⁶⁾

라 하듯 文章의 淵源을 唐宋代에 두고 이러한 詩文集을 多量으로 펴냈던 것이다. 正祖의 在位年間に 刊行된 것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八子百選 6卷, 八家手圖 8卷, 杜陸千選 8卷, 杜律分韻 5卷, 陸律分韻 39卷, 雅誦 8卷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文章의 軌範을 唐宋八家를 비롯하여 性理學이 盛行했던 宋代에 두고 詩文을 장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詩文도 그 正軌에서 發展될 수 있도록 展開시켰으니 「世推 朴闇爲東方詩聖 至謂可與黃太史鴈行 誠非過詡也」⁽³⁷⁾라고 칭찬했던 燕山君代의 天才 詩人 朴闇의 詩集인 增訂挹翠軒集 4卷을 編纂하였다.

(33) 英祖實錄 卷 127 52年 2月 戊午 條.

(34) 이 當時 淸은 康熙帝의 文化振興策으로 實事求是의 새로운 學門인 淸學이 擡頭되었으며, 또한 많은 文化 事業을 통해 後에는 穩속한 乾隆文化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朝鮮朝의 대부분의 學者들은 淸이 漢族이 아닌 未開族일 뿐더러 丙子胡亂時 仁祖의 降伏으로 이를 淸을 不俱戴天之怨讎로 여겼으며, 이런 고로 이들의 學風이 아무리 獨特하다해도 이를 異端視하려 했던 것이다.

(35) 高橋 亨 “弘齋王之文體反正,” 靑丘學叢, 7(1932年 2月), pp. 1~14; 李在郁, “奎章閣 開設의 緣由に就て(下),” 文獻報國 32(1939年 12月), pp. 67~70.

(36) 羣書標記 御定書 3, 八家手圖.

(37) 前編書 “ 2, 增訂挹翠軒集.

또한 이 외에도 後世에 이르러 文書의 體가 改變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朝鮮王朝 初期부터 내려오는 館閣의 글을 모은 文苑繡腋 12卷을 刊行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科擧文의 輯錄인 正始文程 3卷, 瓊林聞喜錄 3卷, 嶠南賓興錄 2卷, 關東賓興錄 5卷, 耽羅賓興錄 1卷, 豐沛賓興錄 2卷, 關北賓興錄 3卷, 關西賓興錄 3卷 등을 刊行하는 등 科擧에 있어서도 특히 詩文을 第一主義로 장려하였던 것이다.

正祖의 이러한 文章優位の 勸獎策은 奏疏文에 있어서도 예리하게 채택되었다. 中國에서 들어온 陸奏約選 2卷, 陸稿手圈 2卷 등을 刊行했던 것이다.

3. 政書에 관한 資料

正祖代에 校書館에서 刊行되었던 文獻들 中 실제 政治에 쓰인 것들을 調査하여 당대의 政治的 및 社會的 政策의 性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실제 政治에 關聯된 諸書들은 四部分類法에 의하면 政書類에 속하는 것이다. 즉 政書類는 六曹를 中心으로 한 政事關係書로서 이에는 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外交, 考工의 分野가 該當된다. 政書類에 包含되는 個個分野의 概念說明과 함께 이와 관련되는 文獻들을 調査해 보면 다음과 같다.

通制는 文物制度 一般과 歷代의 制度를 總括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歷代 制度는 全代 또는 一代의 制度를 總括한 以外에 六職의 制度에 관한 法制章典을 결들인 것을 말할 수 있으니³⁸⁾ 이에 관한 것으로는 正祖 9년에 校書館에서 刊行한 大典通編을 들 수 있다.

이는 朝鮮 朝의 官制 機能 및 統治의 全般 內容을 規定한 것으로 世祖朝의 經國大典에서 비롯되지만 그후 英祖 20年(1744)에 이를 增補해서 續大典을 냈고 다시금 正祖朝에 大典通編을 編纂한 것이다. 이 大典通編은 正祖朝의 官職制度를 中心으로 당시의 官制 機能의 完成을 이룬 點에서 注目케 하는 資料이다. 즉 이는 正祖朝의 完備된 政治制度가 이에 集約되어 있으니

(3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 81 史部 37 政書類 通制之屬書目舉例 參照.

14 도서관학논집

우리는 이를 통해 正祖朝의 安定된 政治制度를 소상하게 살펴 볼 수 있다.

典禮書는 春官이 主掌하는 帝制와 朝章關係가 該當되니⁽³⁹⁾ 一國의 典禮에 該當되는 바, 咸興本宮儀式 2卷, 永興本宮儀式 2卷 및 整理儀軌通編 10卷, 鄉札合編 3卷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宮園儀 4卷 등이 있음을添言한다.

邦計書는 度支가 所掌하는 錢穀, 救荒等の 財政關係書를 말한다.⁽⁴⁰⁾ 이에 是 救荒 活民과 관계되는 字恤典則 1卷이 있으니 財政面에 安定을 기했던 것은 그만큼 政事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軍政書는 軍隊를 育成하는 兵馬制度 및 歷代의 養兵制度에 關한 것을 말함이나⁽⁴¹⁾ 이와 關連하여 兵書는 用兵 즉 兵法 및 武術에 關하여 論한 資料를 말함이니⁽⁴²⁾ 兵器의 操作과 訓練을 거둬하는 兵術까지 포함되는 바 이에 是 武藝圖譜通志 5卷, 兵學通 2卷 및 兵學指南 5卷 諫陣總方 1卷 등이 해당된다. 이로서 政治의 安定은 軍制의 確立 너지 戰術의 研磨에 있는데 이런 軍事面에까지도 完璧을 기하고져 文獻을 刊行하였던 것이다.

外交書는 事大交隣關係書이니 이에는 逐年增修한 同文彙考 129卷이 해당된다.

選舉書는 科擧關係資料인데 科擧文에 關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法令書는 歷代官署의 律令·詞訟·刑獄 등에 關한 것을 말한다.⁽⁴³⁾ 이에 해당하는 것은 正祖 元年 6月 刑具를 整理코져 이에 關한 圖式과 條令을 記錄한 欽恤典則 1卷이 있으며 治獄事實을 記錄한 原續明儀錄 4卷 및 올바른 治獄을 위한 增修無冤錄 2卷이 있다. 이는 특히 國譯까지 하여 一般 百姓에게 高루 알게 하였던 것이다. 이런 點에서 刑獄문제에 대하여 正祖가 얼마나 眞摯를 기했는지 엿볼 수 있다.

(39) 上揭書, 卷 82 史部 38. 政書類叙.

(40) 上揭書, 卷 82 史部 38 邦計之屬 後叙.

(41) 上揭書, 軍政之屬 後叙.

(42) 上揭書, 卷 99 子部 9 兵家類叙.

(43) 上揭書, 法令之屬 後叙.

職官類에 대하여도 상고해 보겠는데 이 職官類는 四部分類法에 의하면 政書類 外에 따로 마련되어 官制와 官箴으로 세분되지만⁽⁴⁴⁾ 여기서는 六曹의 職官을 빼놓을 수 없어 함께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서 校書館에서 刊行된 것으로는 弘文館志 1卷, 奎章閣志 2卷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主要 官衙의 沿革 및 機能을 記錄한 것이니 正祖朝에 있어서는 官衙의 運營과 制度까지 完備되었던 때임을 알 수 있다.

4. 天文에 관한 資料

天文關係書는 天體運行의 推步와 이를 土曜로 天災地變의 징조를 推定하여 政事に 參考⁽⁴⁵⁾가 되도록 엮은 것이며 曆法 및 古儀器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것으로는 正祖 13年の 新法中星紀 1卷, 曆書인 千歲曆 3卷과 正祖 22년의 七政步法 1卷, 正祖 13年の 新法漏壽通義 1卷 등을 刊行하여 널리 썼으니 正祖는 이렇듯 실제생활의 적용에 대하여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正祖朝에 校書館을 통해 刊行되었던 書籍들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 崇儒 및 朱子學에 관한 것, 詩文에 관한 것과 실제 생활에 必要한 天文에 관한 것 및 政書에 關한 資料들로서 구체적으로 政治, 社會, 經濟, 活民, 刑獄, 軍政들의 관계서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실생활에 필요한 資料와 실제 정치에 요구되는 자료와 또한 正祖의 右文政策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료들이 刊行되었던 바, 이들을 통해 당시의 時代 思想 및 政治 社會制度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言

이상 叙述한 바를 要約해 보면 校書館은 書籍의 印出과 함께 印篆 및 香

(44) 上揭書, 卷 79 史部 35 職官類叙.

(45) 班固, 漢書藝文志, 數術略天文·曆譜의 兩叙.

祝을 맡았던 機關으로서 그 淵源이 멀리 泰封까지 거슬러 올라 가겠으나 그 후 高麗朝와 朝鮮朝에 내려와서는 名稱과 機能상에 많은 變遷이 있었으니, 즉 朝鮮朝에서는 太祖 元년에 처음 校書監이라 하였으며, 太宗 元년에는 이를 校書館이라 改稱하여 그 機能을 擴充시켰던 것이다. 世祖 6년에는 鑄字所도 이 校書館에 合屬시켰으나 同王 12년에는 이를 典校署라 名稱하더니 成宗 15년에 비로소 校書館이라 復稱케 되었으며, 正祖朝에는 校書館을 奎章閣의 外閣으로 편입시켰으니 奎章閣을 中心으로 하여 正祖의 右文政策을 펴나가는데 基盤이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校書館의 職制는 太祖朝에 判事, 監, 小監, 丞, 郎, 著作郎, 校勘, 正字 등이 있었으나, 이 역시 그 후 名稱의 變遷과 함께 職制上에도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正祖朝에 奎章閣 外閣으로서의 職制를 보면 提調, 副提調, 校理,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雜職, 吏屬 등으로 되어 있으니, 官員의 증원과 함께 正祖朝에 校書館의 職制가 擴充되었음을 알 수 있다.

校書館의 機能은 물론 祭醮, 祝疏등과 함께 文籍의 印出을 맡았지만 그 중 주된 機能은 書籍의 印出이었던 바, 歷代를 통해 많은 官撰書의 刊行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소요되는 紙價를 받고 書籍을 印出하기도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校書館의 書籍 印出이 대한 特性을 살피기 위하여 우선 朝鮮朝 後期の 문예부흥시기인 正祖朝만을 국한시켜 당시 이를 통해 刊行되었던 書籍들을 中心으로 分析해 보면 崇儒·朱子學에 관한 資料, 詩文에 관한 資料 및 天文에 관한 資料과 政書에 관한 資料 등으로 나타나니,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실제 政治에 쓰이는 資料들 즉 政治, 社會, 經濟, 活民, 刑獄, 軍政에 관계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실제生活 및 政治에 必要한 資料와 함께 正祖의 右文政策을 펴나가기 위한 資料들로서 當時 校書館을 통해 印出된 刊本の 性格을 特徵지을 수 있는바, 그 時代의 政治, 文化 및 社會制度의 特性과 不可分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校書館은 朝鮮朝 歷代를 통하여 官에서 主導하는 書籍들의 印出

을 도맡아 왔음을 알 수 있으니, 朝鮮朝 印刷文化에 대한 研究뿐 아니라 官板의 諸性格을 규명하는데도 배놓을 수 없는 貴重한 機關으로서 이의 보다 폭 넓은 研究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金得浣. 韓國思想史. 서울: 韓國思想研究所, 1973.
2. 羣書標記. 서울: 學文閣, 1973.
3. 李達淳. 韓國政治史 I. 서울: 中央大學校, 1971.
4. 李相伯. 韓國史. 서울: 乙酉文化社, 1967.
5.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7.
6.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上.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7. 한우근. 李朝後期の 社會와 思想. 서울: 乙酉文化社, 1961.
8. 金元龍. “李朝後期の 鑄字印刷,” 鄉土서음, 7 (1959), pp. 7-66.
9. 鄭亨遇. “正祖의 文藝復興政策,” 東方學志, 11 (1970), pp. 166-173.
10. 崔益翰. “朝鮮儒敎思想發展에 對한 歷史的 考察,” 歷史諸問題, 14 (1949)
11. 抽 稿. 羣書標記에 관한 研究.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3.